

1. 개정이유

상수도 공급체계 마비 등의 상황에 대비,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기준 조정(100톤/일 → 50톤/일)으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 필요한 비상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 등의 상황에서 운영 중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고장·파괴 등으로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 명령 등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사전에 대체 운영 가능한 시설의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고자 함.

또한, 동원되어 교육·훈련 및 사태 수습 활동으로 사망(부상)한 민방위 대원의 유족 보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안 제15조 제1항)

- 1)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기준을 1일 용수 생산능력 100톤에서 50톤으로 조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다 폭넓게 민간·공공기관 등의 지하 양수시설을 소유한 시설주와 지정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확대 도모

나. 비상용수 확보 관련 응급조치 명령 사전 준비사항 명확화(안 제15조 제3항)

-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고장, 파괴 등으로 추가적인 시설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와 보상 제도를 통해 민간 등의 지하 양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대상 시설의 관리절차 필요로 이를 반영

다. 유족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

- 1) 임무수행 등으로 사망(부상)한 민방위대원의 유족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족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 편의 도모

라. 타법 6개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현행화(안 제9조제1항 제2호가목, 제21조제2항제2호 가·나·바목,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8호)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명칭 및 연계 조항 변경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 관계기관 사전의견조회('23.6.20.~7.7.) 시, 별도 이견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중 개정된 관계법령 명칭 및 조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장비

소화기·갈퀴·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 시설은 제외한다.

제15조 제목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을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등)”으로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일 생산능력이 100톤”을 “1일 용수 생산능력이 50톤”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용수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민방위사태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공공단체 및 개인 소유의 지하 양수시설에 대해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상시 대상 시설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나목 및 바목의 개정된 관계 법령 및 조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된 소금제조업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라 허가된

식품제조·가공업 중 건빵·라면 제조업

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 제조업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된 관계법령 및 조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 도서관

제21조제2항제8호의 관계법령 및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 구역에 있는 사찰

제55조 별지 제27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xx. xx.>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망(부상)자와의 관계
사 망 자 (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전 화
신 청 내 용	구 분	☐ 재해 보상금(사망·부상) ☐ 휴업 보상금
	신청액	일금 원정(명세서 별첨)
사 고 내 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부상정도	
	사고개요(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휴업 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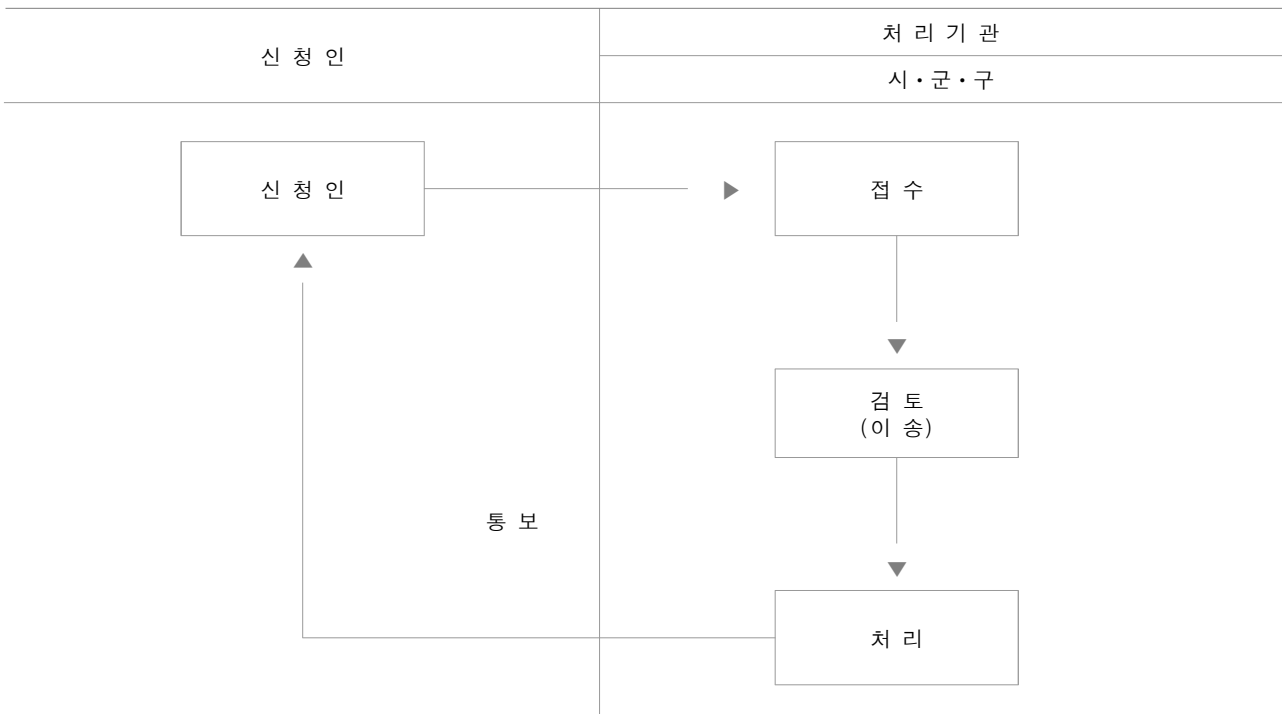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되거나 지연 및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현행	개정안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① (생략)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2. (생략)	2. (현행 제2호와 같음)
가. 소방장비	가. (현행 가목과 같음)
소화기·갈퀴·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의 지정)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① ----- 1일 용수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
② 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 신 설 >	③ 민방위사태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공공단체 및 개인 소유의 지하 양수시설에 대해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상시 대상 시설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② (생략)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2. 영 제21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행 제2호와 같음)
가. 「염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된 염제조업	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된 소금제조업
나.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건빵·라면 제조업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라 허가된 식품제조·가공업 중 건빵·라면 제조업
다. (생략)	다. (현행 다목과 같음)
라. (생략)	라. (현행 라목과 같음)
마. (생략)	마. (현행 마목과 같음)
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 제조업	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3.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 도서관	3. ----- ----- 「도서관법」 제36조에 ----- -----
4.~7. (생략)	4.~7. (현행 4~7호와 같음)
8.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 구역에 있는 사찰	8.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 구역에 있는 사찰

현행	개정안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별지 제27호 서식]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생략) <u>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u> -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u>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u> 2~3. (생략)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별지 제27호 서식]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현행 1호와 같음) (삭제) (현행 3호에서 2호로 변경)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u>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u> 2~3. (현행 2~3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u>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u> 부 칙 < <u>신 설</u>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u>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되거나 지연 및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